1월 2월 부동산세법 8주차 수업 자료

메가랜드 이송원 교수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양도가액	양도가액	양도가액
(-) 취득가액	(-) 취득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u>(-) 필요경비</u>	(-) 필요경비
양도차익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	(-)(장기보유특별공제)	(-)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기본공제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	(양도소득과세표준)
<u>(×) 세율</u>	<u>(×) 세율</u>	<u>(×) 세율</u>
양도소득산출세액	양도소득산출세액	(양도소득산출세액)

추계방법

- 1. 양도가액의 추계결정: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기준시가)
- 2. 취득가액의 추계결정: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액) ⇒ (기준시가)

양도차익 산정원리

양도가액	취득가액
시기하는 기에	실지취득가액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
실지양도가액	액) ⇒ (기준시가)
매매사례가액	실지취득가액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
	액) ⇒ (기준시가)
기 기 기 기	실지취득가액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환산취득가
감정가액	액) ⇒ (기준시가)
기준시가	(기준시가)

저가양도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1) 또는 2) 중 하나에 해당시 거래가액 부인)

- ① (시가 거래가액) = 3억원 이상
- ② (시가 거래가액) = 시가 × 5% 이상

구 분	시 가	거래가액	차 액	양도가액
저가양도	20억원	15억원	5억원	20억원
저가양도	12억원	10억원	2억원	12억원
저가양도	5억원	4억5천만원	5천만원	5억원

취득가액 포함여부

구 분	취득가액
취득세, 등록면허세, 중개보수, 법무사비용	포함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제외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에 대한 소송비용	포함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	포함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 확정 하는 경우 이자상당액	포함
사업자가 면세전용과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하여 납 부하였거나 납부할 부가가치세	포함

고가취득

부당행위계산부인 요건(① 또는 ② 중 하나에 해당시 거래가액 부인)

- ① (시가 거래가액) = 3억원 이상
- ② (시가 거래가액) = 시가 × 5% 이상

구 분	시 가	거래가액	차 액	취득가액
고가취득	12억원	15억원	3억원	12억원
고가취득	8억원	10억원	2억원	8억원
고가취득	3억원	3억2천만원	2천만원	3억원

취득가액 포함여부

구 분	취득가액
거래가액의 지급기일의 지연으로 추가로 발생하는 이자상당액	제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 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징수한 조정금	제외
타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이미 산입된 금액	제외
부동산 취득대금에 충당하기 위한 대출금 이자	제외

양도직접비용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그 지출에 관한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다음에 해당하는 비용으로 한다.

-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 ⓒ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 ⓒ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 ②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

매각차손

토지·건물을 취득할 경우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 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매수자	매각차손	
금융회사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	
금융회사 이외의 자	①과 ② 중 (적은) 금액 인정 ① 실제 매각차손 ② 금융회사에 양도한 경우의 매각차손	

필요경비개산공제

구 분	공제율
토지와 건물	취득 당시 기준시가 × (3)%(미등기 양도
도시가 신출	자산 [0.3]%)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취득 당시 기준시가 × (7)%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취득 당시 기준시가 × (1)%
기타자산	취득 당시 기준시가 × (1)%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

구 분	공제여부
비사업용 토지 + 등기 + 3년 이상 보유	0
부동산에 관한 권리	×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조합원입주권	×
미등기 토지, 건물	×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2주택 이상	×
거주자가 국외 토지, 건물 양도	×
비거주자가 국내 토지, 건물 양도	0

일반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양도**차익** × 공제율(매년 2%씩 증가)

보유기간	공제율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6%	9년 이상 10년 미만	18%
4년 이상 5년 미만	8%	10년 이상 11년 미만	20%
5년 이상 6년 미만	10%	11년 이상 12년 미만	22%
6년 이상 7년 미만	12%	12년 이상 13년 미만	24%
7년 이상 8년 미만	14%	13년 이상 14년 미만	26%
8년 이상 9년 미만	16%	14년 이상 15년 미만	28%
0년 기정 3년 미년 	10%	15년 이상	30%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 양도차익 × 공제율(보유기간 4% + 거주기간 4%)

보유기간	공제율	거주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2%	2년 이상 3년 미만	8%
0천 의정 4천 미친	1270	3년 이상 4년 미만	12%
4년 이상 5년 미만	16%	4년 이상 5년 미만	16%
5년 이상 6년 미만	20%	5년 이상 6년 미만	20%
6년 이상 7년 미만	24%	6년 이상 7년 미만	24%
7년 이상 8년 미만	28%	7년 이상 8년 미만	28%
8년 이상 9년 미만	32%	8년 이상 9년 미만	32%
9년 이상 10년 미만	36%	9년 이상 10년 미만	36%
10년 이상	40%	10년 이상	40%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

구 분		보유기간
이월과	-세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 ~ 양도일
지수비 이 키지	일반적	(상속개시일) ~ 양도일
상속받은 자산	가업상속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 ~ 양도일

양도소득기본공제

구 분		양도소득기본공제액
구네기사 스트그에	부동산 등 소득금액	연 250만원
국내자산 소득금액	주식 등 소득금액	연 250만원
국외자산 소득금액	부동산 등 소득금액	연 250만원

토지,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대상자산		산	양도소득 세율
	미등기 양도자산		(70)%
	이글 이사	일반적인 경우	(6 ~ 45)%
	2년 이상	비사업용 토지	(16 ~ 55)%
		일반적인 경우	(40)%
등 기 양도자산		비사업용 토지	①과 ② 중 큰 세액 ① (40)% ② (16 ~ 55)%
		일반적인 경우	(50)%
	1년 미만	비사업용 토지	①과 ② 중 큰 세액 ① (40)% ② (16 ~ 55)%

주택(다주택 포함),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세율

대상자산		양도소득세율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미등기 양도자산		(70)%	_
2년 이상		(6 ~ 45)%	(60)%
등 기 양도자산	1년 이상 2년 미만	(60)%	(60)%
o 소사건	1년 미만	(70)%	(70)%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

구 분		보유기간
세율적용		(피상속인 취득일) ~ 양도일
장기보유특별공제	일반적	(상속개시일) ~ 양도일
	가업상속	(피상속인 취득일) ~ 양도일

이월과세의 보유기간

구 분	보유기간	
세율적용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 ~ 양도일	
장기보유특별공제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날) ~ 양도일	

미등기 불이익

 계산절차	미등기시의 규제내용
양도가액	
(-) 취득가액	비과세, 감면을 배제한다.
(-) 필요경비	주의 미등기시도 필요경비는 공제된다.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액	양도소득기본공제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 율	100분의 70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소득산출세액	

양도차손 공제

구 분	내 용
그룹별 공제	양도차손은 같은 그룹에 속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하므로 다른 그룹에 속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에서는 공제할 수 없다.
미공제분 소멸	 다른 그룹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에서도 공제할 수 없다.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지도 않는다.

이월과세



- 1. 부정한 행위 관계없이 증여인정(수증자 \Rightarrow 타인)
- 2. 납세의무자: (증여받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3. 연대납세의무 : (없음)
- 4. 취득가액: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가액
- 5. 증여세 : (필요경비 산입)
- 6. 보유기간 :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우회양도부인



- 1. 부정한 행위 존재시 증여부인하고 증여자가 직접 양도간주
- 2. 납세의무자 : (증여자)
- 3. 연대납세의무 : (존재)
- 4. 취득가액: (증여자)의 취득 당시 가액
- 5. 증여세 : (화급)
- 6. 보유기간 :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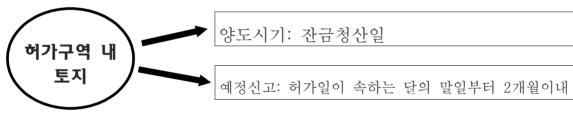
납세지 구분

구 분	국 세	지방세	과세권자	납세지
취득세		0	특, 광, 도	
등록면허세		0	도, 구	물건소재지
재산세		0	시, 군, 구	
종합부동산세	0			주소지
양도소득세	0			十年4

예정신고(예정신고납부 세액공제 없음)

구 분	예정신고기간
원 칙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 양도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토지거래계약 허가받기 전에 허가구역 지정 해제	해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부담부증여의 채무 인수액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허가구역 있는 토지의 양도



계약일	잔금지급일	허가일
1월 30일	2월 28일	5월 30일

가산세 종류

구 분	종 류		가산세율
	과소신고	일반과소신고	(10)%
الد الم	가산세	부당과소신고	(40)%
일 반 공 통	무신고	일반 무신고	(20)%
	가산세	부정 무신고	(40)%
	납부	지연 가산세	25/100,000 + 3/100

확정신고

구 분	내 용
확정신고기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예정신고를 이행한 경우	 예정신고 = 확정신고 : (확정신고 생략 가능) 예정신고 ≠ 확정신고 : (확정신고 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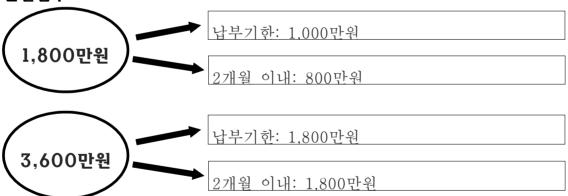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세목별 물납과 분할납부

구 분	물납	분할납부
취득세	×	×
등록면허세	×	×
재산세	0	0
종합부동산세	×	0
양도소득세	×	0

분할납부



국내자산과 국외자산 비교

구 분	국내자산	국외자산
거주자	\bigcirc	\bigcirc
비거주자	\circ	×
부동산임차권	등기 필	등기 불문
장기보유특별공제	\circ	×
양도소득기본공제	\bigcirc	\bigcirc
미등기 세율	70%	6 ~ 45%